

광주지방법원 2024. 10. 15 선고 2024가단50037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 2024. 7. 9.

판결 선고 2024. 10. 15.

주 문

-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,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

별지 변경된 청구원인(일부)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최윤중

별지